

행정사실무법 총평(제7회)

I. 머리말

제7회 행정사 자격시험의 행정사실무법 문제는 제6회 시험의 출제영역과 동일하게 행정심판법에서 논술형 문제, 행정사법, 비송사건절차법 총칙에서 약술형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행정사실무법 4문제 중, 1번 논술형 문제는 2개의 물음으로 분리되어 출제되었으며, 사례문제이기는 하나, 각 물음의 논점이 행정심판법의 중요내용이어서 무난하게 논점파악과 답안작성을 하였을 문제였고, 2번과 3번, 4번 약술형 문제는 여러 차례 강조한 문제이어서 어렵지 않게 답안작성을 하였을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II. 문제평

문제1의1.

행정심판제도의 행정심판법에서 출제되었으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와 참가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본 문제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인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는 가볍게 기술하고, 참가인에 관하여 서술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참가인이나 참가제도에 관하여는 그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바 있습니다.

문제1의2.

행정심판제도의 행정심판법에서 출제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재처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에 따른 조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본 문제는 재처분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조치로 시정명령과 직접처분 그리고 간접강제에 관하여 서술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재처분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출제가 유력하다고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

문제2.

행정사법에서 출제되었으며, 제6회 시험에서 행정사의 의무와 관련된 행정사의 금지행위가 출제되었다고는 하나, 출제가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행정사의 의무는 행정사법에서 행정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중요문자를 이용하여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3.

비송사건절차법 총칙에서 출제되었으며, 총칙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면 출제가 예상되었던 문제였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총칙에서 비송사건절차의 특징과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원심법원의 처리는 제1회 시험부터 제6회 시험까지 출제가 되지 않아서 총칙에서 문제를 출제한다면 출제가 유력하다고 하였습니다.

문제4.

비송사건절차법 총칙에서 출제되었으며, 비송사건의 심리와 관련된 증거조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증거조사는 그 내용은 간단하나, 비송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방법에 해당하므로 심리방법과 사실인정의 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비송사건의 심리는 제1회 시험에서 출제되었으나, 제7회 시험에서 다시 출제될 수 있다고 강조한 문제였습니다.

Ⅲ. 맺음말

제7회 시험의 행정사실무법 문제는 참가인, 시정명령과 직접처분 및 간접강제, 행정사의 의무, 비송사건절차의 특징, 비송사건의 심리와 관련된 문제로 출제가 예상되어 여러 차례 강조하였던 문제였으며, 제 강의의 수강한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답안작성을 하였을 것이고, 고득점을 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실무법 예시답안(제7회)

[문제1] 서울특별시 A구에 거주하는 甲은, 乙의 건축물(음식점 영업과 주거를 함께하는 건물)이 甲소유의 주택과 도로에 연접하고 있는데 乙이 건축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증개축공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甲의 집 앞 도로의 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면서 A구청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甲은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과 乙이 행한 건축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A구청장을 상대로 乙소유 건물의 설계도면과 준공검사 내역 등의 문서를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A구청장은 해당정보가 乙의 사생활 및 영업상 비밀보호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乙 또한 정보공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甲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1) 甲이 청구하는 행정심판은 어느 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에 속하는가? 또한 이 행정심판에서 乙은 어떠한 지위에서 자신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가? (20점)

물음2)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도 불구하고 A구청장이 해당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20점)

[문제2] 행정사법 제4장에서는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아울러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위 금지행위를 제외하고, 제21조의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을 포함하여 행정사법 제4장에서 규정하는 행정사의 업무와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기술하시오. (20점)

[문제3] 비송사건절차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20점)

[문제4] 비송사건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1의 1.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및 乙의 지위

1. 문제의 소재

甲이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을 한 서울특별시 A구청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에서 乙의 지위가 문제이다.

2. 행정심판

①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3.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①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청 및 자치구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및 재결을 한다.

②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④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4. 참가인

①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당해 심판의 결과에 의해 직접 자기의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청이란 당해 처분에 대한 협의권 또는 동의권 등이 부여되어 있는 행정청을 말한다.

④ 참가방법에는 신청에 의한 참가와 요구에 의한 참가가 있다.

5. 결론

① 甲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A구청장이므로 이 사례의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이다.

② 이 사례에서 乙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乙은 이 행정심판에서 심판참가를 하여 참가인의 지위에서 자신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다.

문제1의2. 재결의 구속력 확보 방법

1. 문제의 소재

이 사례의 심판청구가 인용되면, A구청장은 해당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2. 재결의 구속력

구속력이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하며, 인용재결에만 인정된다.

3. 재처분의무

①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재처분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1) 시정명령과 직접처분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처분명령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한다.

② 피청구인이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2) 간접강제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 또는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다.

②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

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 결론

① 이 사례의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재결의 기속력에 의해 피청구인은 이에 구속되므로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A구청장이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의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시정명령과 직접처분 그리고 간접강제가 있다.

문제2. 행정사의 업무와 관련된 의무와 책임

1. 행정사

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를 말한다.

2. 의무와 책임

- ①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행정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소속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 ④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지 못한다.
- ⑤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⑦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⑧ 행정사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문제3. 비송사건절차의 특징

1. 비송사건

비송사건이란 사권관계의 형성·변경·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2. 비송사건절차의 특징

(1) 직권주의

①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처분권주의가 지배하나, 비송사건절차는 직권주의가 지배한다.

②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절차의 종결에 있어서 비송사건절차는 직권주의가 지배한다.

(2) 직권탐지주의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비송사건에서는 재판자료의 수집,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지게 되는 직권탐지주의를 취하고 있다.

(3) 비공개주의

민사소송의 재판은 판결로 하며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비송사건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비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4) 기판력의 결여

① 민사소송의 재판에는 기판력이 인정되나, 비송사건의 재판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당사자는 다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며, 법원도 본래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5) 기속력의 제한

① 민사소송의 재판에는 판결의 기속력이 인정되나, 비송사건의 재판에는 원칙적으로 기속력을 배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6) 간이주의

민사소송절차는 엄격·신중하나, 비송사건절차는 민사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문제4. 비송사건에서의 증거조사

1. 서설

비송사건에서의 증거조사는 비송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방법에 해당한다.

2. 심리방법

(1) 심문

비송사건의 재판은 결정으로써 하고, 그 심리에는 변론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심문의 방법에 의하여 심리한다.

(2) 직권탐지주의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3) 간이주의

법원사무관등은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기타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3. 사실인정의 방법

(1) 사실의 탐지

사실의 탐지는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방법 중 증거조사를 제외한 것을 말하며, 특정한 방식도 없고 강제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증거조사

비송사건에서의 증거조사 방법에는 증인신문과 감정이 있으며, 법원사무관등은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한다.

(3) 사실의 탐지 및 증거조사의 촉탁

사실의 탐지 및 증거조사를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4) 입증책임

비송사건에서는 직권탐지주의를 취하므로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없다.